|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개정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59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개정과 관련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2012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우  2012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1. 제13조에 "민사소송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1개 항을 증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2. 제14조를 "인민검찰원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3. 제16조를 삭제한다.  4. 제25조를 제34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합의를 통하여 피고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등 쟁의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지역 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급별 관할이나 전속관할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1개 조를 증가하여 제26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회사설립, 주주자격 확인, 이윤배당, 해산 등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주소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6. 제38조를 제127조로 고치고 1개 항을 증가하여 제2항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가 관할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지 않고 응소하여 답변한 경우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급별 관할이나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제39조를 제38조로 고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원원에서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다. 확실히 본 법원에서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넘겨 심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제45조를 제44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재판담당자에게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들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근친인 상황  (2)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3)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 심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재판담당자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접대나 예물을 받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을 만난 경우 당사자가 그들의 기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재판담당자에게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앞 3개 항의 규정은 서기, 통역, 감정인, 답사 담당자에게도 적용된다."  9. 1개 조를 증가하여 제55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많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 공공이익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기관과 유관조직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10. 제56조에 1개 항을 증가하여 제3항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 두 개 항에서 규정한 제3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의 일부내용이나 전반내용의 오류로 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민사권익의 손상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당해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를 발급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이를 심리하여 소송청구가 성립하는 경우 원 팔결서, 재정서, 조정서를 변경해야 하며 소송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11. 제5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기 인원은 위임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변호사, 말단 법률 서비스 직원  (2) 당사자의 근친이나 직원  (3) 당사자의 소재지 지역사회, 단위, 관련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공민."  12.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2) 서증  (3) 물증  (4) 시청자료  (5) 전자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의견  (8) 답사기록.  증거는 확인을 거쳐 실증된 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제124조, 제171조의 "감정결론"을 "감정의견"으로 수정한다.  13. 2개 조를 증가하여 제65조와 제66조로 한다.  "제65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 심리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 및 기한을 확정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정해진 기간에 증거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을 경과하여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해야 하며 이유 설명을 거부하거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참작하여 증거를 수용하지 않거나 증거를 수용하고 징계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증거자료를 입수한 후 접수증빙을 발급해야 하며 접수증빙에는 증거의 명칭, 혈수, 건수, 원본 또는 복사본 및 접수일시 등을 명기하고 취급담당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14. 제67조를 제69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정절차의 공증을 거쳐 증명된 법률사실과 법률문서는 인민법원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해야 한다. 단, 공증의 증명을 뒤엎을 수 있는 충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제70조를 제72조, 제73조, 제74조 3개 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2조 무릇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단위와 개인은 법원에 출두하여 입증할 의무가 있다. 관련 단위의 책임자는 증인의 입증을 지지해야 한다.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는 자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  제73조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증인은 법원에 출두하여 입증해야 한다.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고 서면증언, 영상 전송기술이나 영상자료 등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다.  (1) 건강원인으로 인해 법원 출두가 불가한 상황  (2) 노정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법원 출두를 할 수 없는 상황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원 출두를 할 수 없는 상황  (4)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원 출두를 할 수 없는 상황.  제74조 증인이 법원에 출두하여 입증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비용과 결근으로 조성된 손실은 패소측 당사자가 부담하며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먼저 대신 지불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에서 증인에게 통지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먼저 대신 지불한다."  또한 제62조의 “의지”를 “의미”로 수정한다.  16. 제72조를 제76조, 제77조, 제78조 3개 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6조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문제에 한하여 인민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자격이 있는 감정인을 확정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지정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지만 인민법원에서 전문적인 문제로서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하게 해야 한다.  제77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당사자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서를 작성하고 감정의견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제78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대해 이의를 표시하거나 인민법원에서 감정인의 법원 출두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법원에 출두하여 입증해야 한다. 감정인이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법원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 그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하지 못하며 감정비용을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개 조를 증가하여 제79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법원에 출두하게 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의견이나 전문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7. 제74조를 제81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차후에는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는 소송과정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주동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멸실되거나 차후에는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 관계자가 기소 또는 중재 신청 전에 증거 소재지나 피신청자 주소지 또는 사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기타절차는 이 법 제9장 보전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8. 제79조를 제86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송달접수인 또는 그 동거가족의 성년자가 소송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관련 말단조직이나 소속단위의 대표자를 입회시켜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 접수증명서에 접수 거부사유와 일자를 명기하는 한편 송달인,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다음 소송문서를 송달 접수인의 주소지에 두거나, 또는 소송문서를 송달 접수인의 주소지에 두고 송달과정을 촬영, 녹화 등 방식으로 기록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개 조를 증가하여 제87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달 접수인의 동의를 얻고 인민법원은 팩스, 전자우편 등 접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이 송달 접수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일자를 송달 일자로 한다."  19. 제82조를 제90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송달 접수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속소를 통해 전달한다.  송달 접수인이 강제적 교양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적 교양기구를 통하여 전달한다."  상응하게 제2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강제적 교양조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20. 제9장의 제목, 제96조, 제99조, 제140조, 제256조 중의 "재산보전"을 "보전"으로 수정한다.  21. 제92조를 제100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상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상대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보전을 재정하고 그에게 모종 행위를 하게하거나 모종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필요시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재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긴급한 상황에서는 48시간 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보전조치를 취하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  22. 제93조를 제101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이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전재산 소재지, 신청대상 주소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서는 48시간 내에 재정해야 하며 보전조치를 취하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에서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23. 제94조를 2개 조로 분리하여 제102조, 제103조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2조 보전은 청구한 범위 또는 본 사건과 관련되는 재산에 한한다.  제103조 재산보전은 봉인, 차압, 동결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방법을 취한다. 인민법원에서는 재산보전 후 즉시 재산보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봉인, 동결한 재산은 중복 봉인, 동결하지 못한다.󰡓  제95조를 제104조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재산쟁의 사건에서 피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24. 2개 조를 증가하여 제112조와 제113조로 한다.  "재112조 당사자 간에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소송, 조정 등 방식을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사정에 따라 벌금, 구치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3조 집행 대상이 타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소송, 중재, 조정 등 방식을 통해 법률문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도피한 경우 인민법원은 정상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치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5. 제103조를 제114조로 고치고 그중의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유관단위에서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접수한 후 조회, 차압, 동결, 대체, 재산매각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제104조를 제115조로 고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인에 대한 벌금액은 인민폐 10만위안 이하로 하고, 단위에 대한 벌금액은 인민폐 5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로 한다."  26. 제110조를 제121조로 고치고 제(1)호를 분리하여 제(1)호와 제(2)호하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원고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단위, 주소, 연락방식,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와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연락방식  (2) 피고의 성명, 성별, 근무단위, 주소 등 정보, 법인이나 기타조직의 명칭, 주소 등 정보"  제113조를 제125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일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피고는 기소장 사본 입수일로부터 15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단위, 주소, 연락방법, 법인이나 기타조직의 명칭, 주소와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연락방법을 명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 입수일로부터 5일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발송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민법원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7. 1개 조를 증가하여 제122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민사분쟁이 조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 조정을 실시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8. 제111조를 제124조로 고치고 그중의 "인민법원은 이 법 제108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송에 대하여는 각기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를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법률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중재에 회부고 인민법원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이미 판결서, 재정서, 조성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고지한다. 단, 인민법원에서 취하를 윤허한 재정은 예외로 한다."  29. 제112조를 제123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향유하는 소송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법 제119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소송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7일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송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내에 재정서를 작성하여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원고가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다."  30. 1개 조를 증가하여 제133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법원은 수리한 사건을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한다.  (1) 당사자 간에 쟁의가 없고 독촉 절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로 진입할 수 있다.  (2) 개정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방식을 통하여 분쟁을 즉시 해결한다.  (3)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간이절차나 보통절차를 적용한다.  (4) 개정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증거교환 등 방식을 통하여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31. 제124조를 제138조로 고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서증과 물증, 시청 자료, 전자데이터를 제시한다."  32. 제138조를 제152조로 고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판결서에는 판결결과와 판결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판결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한 법률과 이유"  33. 제140조를 제154조로 고치고 제1항 제(9)호를 "(9) 취소하였거나 집행하지 않는 중재재결"로 수정한다.  제2항을 "전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재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3항을 "재정서에는 재정결과와 그 재정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재성서에는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구두재정은 기록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34. 1개 조를 증가하여 제156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은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재정서를 조회할 수 있으나 국가의 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35. 제142조를 제157조로 고치고 다음의 내용을 증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말단인민법원과 그가 파출한 법정이 전항 규정 그 밖의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은 간이절차의 적용을 약정할 수 있다."  36. 제144조를 제159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말단인민법원과 그가 파출한 법정이 사안이 단순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간편한 방법으로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하고 소송문서를 송달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7. 1개 조를 증가하여 제162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단인민법원과 그가 파출한 법정이 이 법 제157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는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그 표적 금액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그 전연도 취업자 노임평균의 30%이하인 경우에는 1심 종심제를 적용한다."  38. 1개 조를 증가하여 제163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과정에 인민법원에서 간이절차 적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통절차 전환을 재정한다."  39. 제152조를 제169조로 고치고 제1항을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제2심 인민법원에서는 합의정을 구성하여 개정 심리해야 한다. 사건서류 사열, 조사, 당사자 질문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 증거나 이유가 없고 합의정을 구성하여 개정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한다.  40. 제153조를 제170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심 인민법원에서는 상소사건을 심리하고 하기 상황에 따라 분별 처리한다.  (1) 원 판결이나 재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확실하고 법률적용이 정확한 경우 판결이나 재정하는 방식으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과 재정을 유지한다.  (2) 원 판결이나 재정에서 인정한 사실에 오류가 있고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판결이나 재정 방식으로 개판,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한다.  (3) 원 팔결에서 인정한 기본사실이 불명한 경우 원 판결 취소하고 원 인민법원에 반환하여 재심하게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개판한다.  (4) 원 판결에서 당사자가 누락되었거나 불법적으로 궐석판결을 한 등 법정절차를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원 판결을 취소하고 원 인민법원에 반환하여 재심하게 한다.  원심 인민법원에서 반환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한 후 당사자가 상소한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은 다시 반환하여 재심하게 할 수 없다."  41. 제160조를 제177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민법원에서 선거인 자격 인정 사건, 실종선고나 사망선고 사건, 공민의 민사상 행위 무능력이나 민사상 한정 행위능력 확인 사건, 재산소유자 부재인정 사건, 합의 해제확인 사건, 담보물권 실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42. 제15장 제5절 다음에 절 2개를 증가하여 제6절과 제7절로 한다.  "제6절 조정합의 확인 사건  제194조 조정합의 사법 확인신청은 당사자 쌍방이 인민조정법 등 법률에 따라 조정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공동으로 조정기구 소재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제195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심사하고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합의의 유효를 재정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기각을 재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원 조정합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정합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7절 담보물권 실현 사건  제196조 담보물권 실현신청은 담보물권인 및 담보물권 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유권자가 물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담보재산 소재지나 담보물권 등록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제197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심사하고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담보재산의 경매, 매각을 재정하며, 당사자는 그 재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3. 제178조를 제199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당사자가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수가 많거나 당사자 쌍방이 공민인 사건은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판결, 재정의 집행은 중지하지 않는다."  44. 제179조를 제200조로 고치고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증거에 대해 당사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기 때어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증거수집을 신청하였으나 인민법원에서 수집하지 않은 경우"  제1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2항을 제(13)호로 하고 내용을 "(13) 재판 담당자가 당해사건을 심리하면서 횡령, 수뢰, 사리를 위한 부정, 불법재판 등 행위를 한 경우."로 수정한다.  45. 제181조를 제204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민법원은 재심신청 입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해야 하며, 이 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재심을 하기로 재정하고 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법원 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을 하기로 재정한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단, 당사자가 이 법 제19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말단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에서 재심을 재정한 사건은 본 법원에서 재심하거나 여타 인민법원에 넘겨 재심하며 원심 인민법원에 넘겨 재심하게 할 수도 있다."  46. 제182조를 제201조로 고친다. 제177조, 제183조, 제185조, 제189조를 제198조, 제202조, 제206조, 제212조로 고쳐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8조 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본 법원의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재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 그리고 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하급 인민법원의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 인민법원에 지시하여 재심하게 할 권한이 있다.  제202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혼인관계 해제와 관련한 판결서, 조정서의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206조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원 판결서, 원 재정서, 원 조정서의 집행을 중지시킨다. 단, 봉양비용, 양육비, 부양비, 무휼비용, 의료비용, 근로보수 청구사건 등은 집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2조 인민검찰원에서 인민법원의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에 대한 항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47. 제184조를 제205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판결이나 재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원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 제200조 제(1)호, 제(3)호, 제(12)호, 제(13)호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48. 제187조를 제208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최고검찰원에서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그리고 상급 인민법원에서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하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이법 제200조에서 규정한 상황중 하나가 있음을 발견하였거나 조정서가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손상한 것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에서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동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이법 제200조에서 규정한 상황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건의를 제출하는 동시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비치해야 하며, 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신청하여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에서 재판감독절차 이외의 기타 재판절차에서 재판담당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건의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49. 2개 조를 증가하여 제209조와 제210조로 한다.  "제209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건의를 신청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한 경우  (2) 인민법원에서 기간을 경과하여도 재심신청에 대해 재정을 하지 않은 경우  (3) 재심 판결이나 재정에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에서는 3개월 내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검찰건의나 항소 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차 인민검찰원에 검찰건의나 항소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10조 인민검찰원은 법률 감독직책을 이행하고 검찰건의나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나 사건 국외자를 대상으로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50. 제188조를 제211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민검찰원에서 항소를 제출한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항소장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재결을 해야 한다. 이 법 제200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직속하급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으나 직속하급 인민법원에서 재심한 사건은 예외로 한다."  51. 제194조를 제217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민법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서면이의를 접수한 후 심사하여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감독절차를 종료하기로 재정해야 하며 지불 령은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지불 령이 실효되면 소송절차로 들어간다. 단, 지불 령 신청당사자 측이 소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2. 제207조를 제230조로 고치고 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집행신청인이 사기나 협박을 받아 피집행인과 화해합의를 보았거나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원 법률문서의 집행을 회복한다."  53. 1개 조를 증가하여 제235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검찰원은 민사 집행활동에 대한 법률 감독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54. 제213조를 제237조로 고치고 그 제2항의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재결의 의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5) 상대측 당사자가 중재기구의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미출 수 있는 증거를 은닉한 경우"  55. 제216조를 제240조로 고치고 내용을 "집행신청서나 집행 인수인계서를 접수한 집행원은 피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송하고 아울러 즉각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56. 제218조를 제242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단위를 통해 피집행인이 소지한 예금, 채권, 증권, 펀드 등 재산상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피집행인의 재산을 차압, 동결, 대체, 매각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차압, 동결, 대체, 매각하는 재산은 피집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이 차압, 동결, 대체, 매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결정을 내리고 집행협조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관련단위에서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57. 제223조를 제247조로 고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집행원은 재산을 봉인, 차압한 후 피집행인에게 지정한 기간에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이행을 명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봉인, 차압한 재산을 경매해야 한다. 경매할 수 없거나 당사자 쌍방이 경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관련단위에 위임하여 매각하게 하거나 자체로 매각할 수 있다. 국가에서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물품은 관련단위에 넘겨 국가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한다."  58. 제242조, 제243조를 삭제한다.  59. 제245조를 제267조로 고치고 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 송달 수령인 소재국의 법률이 우편송달을 허용하는 경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우송일로부터 만 3개월을 경과하여 송달 수령증을 반송 받지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송달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을 송달일로 간주한다."  1개호를 증가하여 제(7)호로 한다. "(7) 팩스, 전자우면 등 송달 접수인의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송달한다."  제(7)호를 제(8)호로 고치고 내용을 "(8)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고 공시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수정한다.  60. 제26장 "재산보전"을 삭제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장절 순번과 조문 순번을 이 결정에 따라 조정한다.  본 결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본 결정에 따라 수정하여 재 반포한다. |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法》的决定**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五十九号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决定》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于２０１２年８月３１日通过，现予公布，自２０１３年１月１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胡锦涛 　　　　　　　　　　　　　　　　　　　　　　　　　２０１２年８月３１日  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作如下修改：  一、第十三条增加一款，作为第一款：“民事诉讼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  二、将第十四条修改为：“人民检察院有权对民事诉讼实行法律监督。”  三、删去第十六条。  四、将第二十五条改为第三十四条，修改为：“合同或者其他财产权益纠纷的当事人可以书面协议选择被告住所地、合同履行地、合同签订地、原告住所地、标的物所在地等与争议有实际联系的地点的人民法院管辖，但不得违反本法对级别管辖和专属管辖的规定。”  五、增加一条，作为第二十六条：“因公司设立、确认股东资格、分配利润、解散等纠纷提起的诉讼，由公司住所地人民法院管辖。”  六、将第三十八条改为第一百二十七条，增加一款，作为第二款：“当事人未提出管辖异议，并应诉答辩的，视为受诉人民法院有管辖权，但违反级别管辖和专属管辖规定的除外。”  七、将第三十九条改为第三十八条，第一款修改为：“上级人民法院有权审理下级人民法院管辖的第一审民事案件；确有必要将本院管辖的第一审民事案件交下级人民法院审理的，应当报请其上级人民法院批准。”  八、将第四十五条改为第四十四条，修改为：“审判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自行回避，当事人有权用口头或者书面方式申请他们回避：  “（一）是本案当事人或者当事人、诉讼代理人近亲属的；  “（二）与本案有利害关系的；  “（三）与本案当事人、诉讼代理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对案件公正审理的。  “审判人员接受当事人、诉讼代理人请客送礼，或者违反规定会见当事人、诉讼代理人的，当事人有权要求他们回避。  “审判人员有前款规定的行为的，应当依法追究法律责任。  “前三款规定，适用于书记员、翻译人员、鉴定人、勘验人。”  九、增加一条，作为第五十五条：“对污染环境、侵害众多消费者合法权益等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法律规定的机关和有关组织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十、第五十六条增加一款，作为第三款：“前两款规定的第三人，因不能归责于本人的事由未参加诉讼，但有证据证明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的部分或者全部内容错误，损害其民事权益的，可以自知道或者应当知道其民事权益受到损害之日起六个月内，向作出该判决、裁定、调解书的人民法院提起诉讼。人民法院经审理，诉讼请求成立的，应当改变或者撤销原判决、裁定、调解书；诉讼请求不成立的，驳回诉讼请求。”  十一、将第五十八条第二款修改为：“下列人员可以被委托为诉讼代理人：  “（一）律师、基层法律服务工作者；  “（二）当事人的近亲属或者工作人员；  “（三）当事人所在社区、单位以及有关社会团体推荐的公民。”  十二、将第六十三条修改为：“证据包括：  “（一）当事人的陈述；  “（二）书证；  “（三）物证；  “（四）视听资料；  “（五）电子数据；  “（六）证人证言；  “（七）鉴定意见；  “（八）勘验笔录。  “证据必须查证属实，才能作为认定事实的根据。”  相应地将第一百二十四条、第一百七十一条中的“鉴定结论”修改为“鉴定意见”。  十三、增加二条，作为第六十五条、第六十六条：  “第六十五条　当事人对自己提出的主张应当及时提供证据。  “人民法院根据当事人的主张和案件审理情况，确定当事人应当提供的证据及其期限。当事人在该期限内提供证据确有困难的，可以向人民法院申请延长期限，人民法院根据当事人的申请适当延长。当事人逾期提供证据的，人民法院应当责令其说明理由；拒不说明理由或者理由不成立的，人民法院根据不同情形可以不予采纳该证据，或者采纳该证据但予以训诫、罚款。  “第六十六条　人民法院收到当事人提交的证据材料，应当出具收据，写明证据名称、页数、份数、原件或者复印件以及收到时间等，并由经办人员签名或者盖章。”  十四、将第六十七条改为第六十九条，修改为：“经过法定程序公证证明的法律事实和文书，人民法院应当作为认定事实的根据，但有相反证据足以推翻公证证明的除外。”  十五、将第七十条改为三条，作为第七十二条、第七十三条、第七十四条，修改为：  “第七十二条　凡是知道案件情况的单位和个人，都有义务出庭作证。有关单位的负责人应当支持证人作证。  “不能正确表达意思的人，不能作证。  “第七十三条　经人民法院通知，证人应当出庭作证。有下列情形之一的，经人民法院许可，可以通过书面证言、视听传输技术或者视听资料等方式作证：  “（一）因健康原因不能出庭的；  “（二）因路途遥远，交通不便不能出庭的；  “（三）因自然灾害等不可抗力不能出庭的；  “（四）其他有正当理由不能出庭的。  “第七十四条　证人因履行出庭作证义务而支出的交通、住宿、就餐等必要费用以及误工损失，由败诉一方当事人负担。当事人申请证人作证的，由该当事人先行垫付；当事人没有申请，人民法院通知证人作证的，由人民法院先行垫付。”  相应地将第六十二条中的“意志”修改为“意思”。  十六、将第七十二条改为三条，作为第七十六条、第七十七条、第七十八条，修改为：  “第七十六条　当事人可以就查明事实的专门性问题向人民法院申请鉴定。当事人申请鉴定的，由双方当事人协商确定具备资格的鉴定人；协商不成的，由人民法院指定。  “当事人未申请鉴定，人民法院对专门性问题认为需要鉴定的，应当委托具备资格的鉴定人进行鉴定。  “第七十七条　鉴定人有权了解进行鉴定所需要的案件材料，必要时可以询问当事人、证人。  “鉴定人应当提出书面鉴定意见，在鉴定书上签名或者盖章。  “第七十八条　当事人对鉴定意见有异议或者人民法院认为鉴定人有必要出庭的，鉴定人应当出庭作证。经人民法院通知，鉴定人拒不出庭作证的，鉴定意见不得作为认定事实的根据；支付鉴定费用的当事人可以要求返还鉴定费用。”  增加一条，作为第七十九条：“当事人可以申请人民法院通知有专门知识的人出庭，就鉴定人作出的鉴定意见或者专业问题提出意见。”  十七、将第七十四条改为第八十一条，修改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当事人可以在诉讼过程中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人民法院也可以主动采取保全措施。  “因情况紧急，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利害关系人可以在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前向证据所在地、被申请人住所地或者对案件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证据保全的其他程序，参照适用本法第九章保全的有关规定。”  十八、将第七十九条改为第八十六条，修改为：“受送达人或者他的同住成年家属拒绝接收诉讼文书的，送达人可以邀请有关基层组织或者所在单位的代表到场，说明情况，在送达回证上记明拒收事由和日期，由送达人、见证人签名或者盖章，把诉讼文书留在受送达人的住所；也可以把诉讼文书留在受送达人的住所，并采用拍照、录像等方式记录送达过程，即视为送达。”  增加一条，作为第八十七条：“经受送达人同意，人民法院可以采用传真、电子邮件等能够确认其收悉的方式送达诉讼文书，但判决书、裁定书、调解书除外。  “采用前款方式送达的，以传真、电子邮件等到达受送达人特定系统的日期为送达日期。”  十九、将第八十二条改为第九十条，修改为：“受送达人被监禁的，通过其所在监所转交。  “受送达人被采取强制性教育措施的，通过其所在强制性教育机构转交。”  相应地将第二十三条第三项修改为：“（三）对被采取强制性教育措施的人提起的诉讼”。  二十、将第九章的章名、第九十六条、第九十九条、第一百四十条、第二百五十六条中的“财产保全”修改为“保全”。  二十一、将第九十二条改为第一百条，修改为：“人民法院对于可能因当事人一方的行为或者其他原因，使判决难以执行或者造成当事人其他损害的案件，根据对方当事人的申请，可以裁定对其财产进行保全、责令其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其作出一定行为；当事人没有提出申请的，人民法院在必要时也可以裁定采取保全措施。  “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可以责令申请人提供担保，申请人不提供担保的，裁定驳回申请。  “人民法院接受申请后，对情况紧急的，必须在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裁定采取保全措施的，应当立即开始执行。”  二十二、将第九十三条改为第一百零一条，修改为：“利害关系人因情况紧急，不立即申请保全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前向被保全财产所在地、被申请人住所地或者对案件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采取保全措施。申请人应当提供担保，不提供担保的，裁定驳回申请。  “人民法院接受申请后，必须在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裁定采取保全措施的，应当立即开始执行。  “申请人在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后三十日内不依法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的，人民法院应当解除保全。”  二十三、将第九十四条改为二条，作为第一百零二条、第一百零三条，修改为：  “第一百零二条　保全限于请求的范围，或者与本案有关的财物。  “第一百零三条　财产保全采取查封、扣押、冻结或者法律规定的其他方法。人民法院保全财产后，应当立即通知被保全财产的人。  “财产已被查封、冻结的，不得重复查封、冻结。”  将第九十五条改为第一百零四条，修改为：“财产纠纷案件，被申请人提供担保的，人民法院应当裁定解除保全。”  二十四、增加二条，作为第一百一十二条、第一百一十三条：  “第一百一十二条　当事人之间恶意串通，企图通过诉讼、调解等方式侵害他人合法权益的，人民法院应当驳回其请求，并根据情节轻重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一十三条　被执行人与他人恶意串通，通过诉讼、仲裁、调解等方式逃避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的，人民法院应当根据情节轻重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二十五、将第一百零三条改为第一百一十四条，第一款第二项修改为：“（二）有关单位接到人民法院协助执行通知书后，拒不协助查询、扣押、冻结、划拨、变价财产的”。  将第一百零四条改为第一百一十五条，第一款修改为：“对个人的罚款金额，为人民币十万元以下。对单位的罚款金额，为人民币五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  二十六、将第一百一十条改为第一百二十一条，第一项改为二项，作为第一项、第二项，修改为：  “（一）原告的姓名、性别、年龄、民族、职业、工作单位、住所、联系方式，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联系方式；  “（二）被告的姓名、性别、工作单位、住所等信息，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住所等信息”。  将第一百一十三条改为第一百二十五条，修改为：“人民法院应当在立案之日起五日内将起诉状副本发送被告，被告应当在收到之日起十五日内提出答辩状。答辩状应当记明被告的姓名、性别、年龄、民族、职业、工作单位、住所、联系方式；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联系方式。人民法院应当在收到答辩状之日起五日内将答辩状副本发送原告。  “被告不提出答辩状的，不影响人民法院审理。”  二十七、增加一条，作为第一百二十二条：“当事人起诉到人民法院的民事纠纷，适宜调解的，先行调解，但当事人拒绝调解的除外。”  二十八、将第一百一十一条改为第一百二十四条，其中的“人民法院对符合本法第一百零八条的起诉，必须受理；对下列起诉，分别情形，予以处理：”修改为：“人民法院对下列起诉，分别情形，予以处理：”。  第二项修改为：“（二）依照法律规定，双方当事人达成书面仲裁协议申请仲裁、不得向人民法院起诉的，告知原告向仲裁机构申请仲裁”。  第五项修改为：“（五）对判决、裁定、调解书已经发生法律效力的案件，当事人又起诉的，告知原告申请再审，但人民法院准许撤诉的裁定除外”。  二十九、将第一百一十二条改为第一百二十三条，修改为：“人民法院应当保障当事人依照法律规定享有的起诉权利。对符合本法第一百一十九条的起诉，必须受理。符合起诉条件的，应当在七日内立案，并通知当事人；不符合起诉条件的，应当在七日内作出裁定书，不予受理；原告对裁定不服的，可以提起上诉。”  三十、增加一条，作为第一百三十三条：“人民法院对受理的案件，分别情形，予以处理：  “（一）当事人没有争议，符合督促程序规定条件的，可以转入督促程序；  “（二）开庭前可以调解的，采取调解方式及时解决纠纷；  “（三）根据案件情况，确定适用简易程序或者普通程序；  “（四）需要开庭审理的，通过要求当事人交换证据等方式，明确争议焦点。”  三十一、将第一百二十四条改为第一百三十八条，第三项修改为：“（三）出示书证、物证、视听资料和电子数据”。  三十二、将第一百三十八条改为第一百五十二条，第一款中的“判决书应当写明：”修改为：“判决书应当写明判决结果和作出该判决的理由。判决书内容包括：”。  第一款第二项修改为：“（二）判决认定的事实和理由、适用的法律和理由”。  三十三、将第一百四十条改为第一百五十四条，第一款第九项修改为：“（九）撤销或者不予执行仲裁裁决”。  第二款修改为：“对前款第一项至第三项裁定，可以上诉。”  第三款修改为：“裁定书应当写明裁定结果和作出该裁定的理由。裁定书由审判人员、书记员署名，加盖人民法院印章。口头裁定的，记入笔录。”  三十四、增加一条，作为第一百五十六条：“公众可以查阅发生法律效力的判决书、裁定书，但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内容除外。”  三十五、将第一百四十二条改为第一百五十七条，增加一款，作为第二款：“基层人民法院和它派出的法庭审理前款规定以外的民事案件，当事人双方也可以约定适用简易程序。”  三十六、将第一百四十四条改为第一百五十九条，修改为：“基层人民法院和它派出的法庭审理简单的民事案件，可以用简便方式传唤当事人和证人、送达诉讼文书、审理案件，但应当保障当事人陈述意见的权利。”  三十七、增加一条，作为第一百六十二条：“基层人民法院和它派出的法庭审理符合本法第一百五十七条第一款规定的简单的民事案件，标的额为各省、自治区、直辖市上年度就业人员年平均工资百分之三十以下的，实行一审终审。”  三十八、增加一条，作为第一百六十三条：“人民法院在审理过程中，发现案件不宜适用简易程序的，裁定转为普通程序。”  三十九、将第一百五十二条改为第一百六十九条，第一款修改为：“第二审人民法院对上诉案件，应当组成合议庭，开庭审理。经过阅卷、调查和询问当事人，对没有提出新的事实、证据或者理由，合议庭认为不需要开庭审理的，可以不开庭审理。”  四十、将第一百五十三条改为第一百七十条，修改为：“第二审人民法院对上诉案件，经过审理，按照下列情形，分别处理：  “（一）原判决、裁定认定事实清楚，适用法律正确的，以判决、裁定方式驳回上诉，维持原判决、裁定；  “（二）原判决、裁定认定事实错误或者适用法律错误的，以判决、裁定方式依法改判、撤销或者变更；  “（三）原判决认定基本事实不清的，裁定撤销原判决，发回原审人民法院重审，或者查清事实后改判；  “（四）原判决遗漏当事人或者违法缺席判决等严重违反法定程序的，裁定撤销原判决，发回原审人民法院重审。  “原审人民法院对发回重审的案件作出判决后，当事人提起上诉的，第二审人民法院不得再次发回重审。”  四十一、将第一百六十条改为第一百七十七条，修改为：“人民法院审理选民资格案件、宣告失踪或者宣告死亡案件、认定公民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案件、认定财产无主案件、确认调解协议案件和实现担保物权案件，适用本章规定。本章没有规定的，适用本法和其他法律的有关规定。”  四十二、在第十五章第五节后增加二节，作为第六节、第七节：  “第六节　确认调解协议案件  “第一百九十四条　申请司法确认调解协议，由双方当事人依照人民调解法等法律，自调解协议生效之日起三十日内，共同向调解组织所在地基层人民法院提出。  “第一百九十五条　人民法院受理申请后，经审查，符合法律规定的，裁定调解协议有效，一方当事人拒绝履行或者未全部履行的，对方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执行；不符合法律规定的，裁定驳回申请，当事人可以通过调解方式变更原调解协议或者达成新的调解协议，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七节　实现担保物权案件  “第一百九十六条　申请实现担保物权，由担保物权人以及其他有权请求实现担保物权的人依照物权法等法律，向担保财产所在地或者担保物权登记地基层人民法院提出。  “第一百九十七条　人民法院受理申请后，经审查，符合法律规定的，裁定拍卖、变卖担保财产，当事人依据该裁定可以向人民法院申请执行；不符合法律规定的，裁定驳回申请，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四十三、将第一百七十八条改为第一百九十九条，修改为：“当事人对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认为有错误的，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再审；当事人一方人数众多或者当事人双方为公民的案件，也可以向原审人民法院申请再审。当事人申请再审的，不停止判决、裁定的执行。”  四十四、将第一百七十九条改为第二百条，第一款第五项修改为：“（五）对审理案件需要的主要证据，当事人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书面申请人民法院调查收集，人民法院未调查收集的”。  删去第一款第七项。  将第二款作为第十三项，修改为：“（十三）审判人员审理该案件时有贪污受贿，徇私舞弊，枉法裁判行为的。”  四十五、将第一百八十一条改为第二百零四条，修改为：“人民法院应当自收到再审申请书之日起三个月内审查，符合本法规定的，裁定再审；不符合本法规定的，裁定驳回申请。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由本院院长批准。  “因当事人申请裁定再审的案件由中级人民法院以上的人民法院审理，但当事人依照本法第一百九十九条的规定选择向基层人民法院申请再审的除外。最高人民法院、高级人民法院裁定再审的案件，由本院再审或者交其他人民法院再审，也可以交原审人民法院再审。”  四十六、将第一百八十二条改为第二百零一条。将第一百七十七条、第一百八十三条、第一百八十五条、第一百八十九条改为第一百九十八条、第二百零二条、第二百零六条、第二百一十二条，修改为：  “第一百九十八条　各级人民法院院长对本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发现确有错误，认为需要再审的，应当提交审判委员会讨论决定。  “最高人民法院对地方各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上级人民法院对下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发现确有错误的，有权提审或者指令下级人民法院再审。  “第二百零二条　当事人对已经发生法律效力的解除婚姻关系的判决、调解书，不得申请再审。  “第二百零六条　按照审判监督程序决定再审的案件，裁定中止原判决、裁定、调解书的执行，但追索赡养费、扶养费、抚育费、抚恤金、医疗费用、劳动报酬等案件，可以不中止执行。  “第二百一十二条　人民检察院决定对人民法院的判决、裁定、调解书提出抗诉的，应当制作抗诉书。”  四十七、将第一百八十四条改为第二百零五条，修改为：“当事人申请再审，应当在判决、裁定发生法律效力后六个月内提出；有本法第二百条第一项、第三项、第十二项、第十三项规定情形的，自知道或者应当知道之日起六个月内提出。”  四十八、将第一百八十七条改为第二百零八条，修改为：“最高人民检察院对各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上级人民检察院对下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发现有本法第二百条规定情形之一的，或者发现调解书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应当提出抗诉。  “地方各级人民检察院对同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发现有本法第二百条规定情形之一的，或者发现调解书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可以向同级人民法院提出检察建议，并报上级人民检察院备案；也可以提请上级人民检察院向同级人民法院提出抗诉。  “各级人民检察院对审判监督程序以外的其他审判程序中审判人员的违法行为，有权向同级人民法院提出检察建议。”  四十九、增加二条，作为第二百零九条、第二百一十条：  “第二百零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当事人可以向人民检察院申请检察建议或者抗诉：  “（一）人民法院驳回再审申请的；  “（二）人民法院逾期未对再审申请作出裁定的；  “（三）再审判决、裁定有明显错误的。  “人民检察院对当事人的申请应当在三个月内进行审查，作出提出或者不予提出检察建议或者抗诉的决定。当事人不得再次向人民检察院申请检察建议或者抗诉。  “第二百一十条　人民检察院因履行法律监督职责提出检察建议或者抗诉的需要，可以向当事人或者案外人调查核实有关情况。”  五十、将第一百八十八条改为第二百一十一条，修改为：“人民检察院提出抗诉的案件，接受抗诉的人民法院应当自收到抗诉书之日起三十日内作出再审的裁定；有本法第二百条第一项至第五项规定情形之一的，可以交下一级人民法院再审，但经该下一级人民法院再审的除外。”  五十一、将第一百九十四条改为第二百一十七条，修改为：“人民法院收到债务人提出的书面异议后，经审查，异议成立的，应当裁定终结督促程序，支付令自行失效。  “支付令失效的，转入诉讼程序，但申请支付令的一方当事人不同意提起诉讼的除外。”  五十二、将第二百零七条改为第二百三十条，第二款修改为：“申请执行人因受欺诈、胁迫与被执行人达成和解协议，或者当事人不履行和解协议的，人民法院可以根据当事人的申请，恢复对原生效法律文书的执行。”  五十三、增加一条，作为第二百三十五条：“人民检察院有权对民事执行活动实行法律监督。”  五十四、将第二百一十三条改为第二百三十七条，第二款第四项、第五项修改为：  “（四）裁决所根据的证据是伪造的；  “（五）对方当事人向仲裁机构隐瞒了足以影响公正裁决的证据的”。  五十五、将第二百一十六条改为第二百四十条，修改为：“执行员接到申请执行书或者移交执行书，应当向被执行人发出执行通知，并可以立即采取强制执行措施。”  五十六、将第二百一十八条改为第二百四十二条，修改为：“被执行人未按执行通知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人民法院有权向有关单位查询被执行人的存款、债券、股票、基金份额等财产情况。人民法院有权根据不同情形扣押、冻结、划拨、变价被执行人的财产。人民法院查询、扣押、冻结、划拨、变价的财产不得超出被执行人应当履行义务的范围。  “人民法院决定扣押、冻结、划拨、变价财产，应当作出裁定，并发出协助执行通知书，有关单位必须办理。”  五十七、将第二百二十三条改为第二百四十七条，修改为：“财产被查封、扣押后，执行员应当责令被执行人在指定期间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被执行人逾期不履行的，人民法院应当拍卖被查封、扣押的财产；不适于拍卖或者当事人双方同意不进行拍卖的，人民法院可以委托有关单位变卖或者自行变卖。国家禁止自由买卖的物品，交有关单位按照国家规定的价格收购。”  五十八、删去第二百四十二条、第二百四十三条。  五十九、将第二百四十五条改为第二百六十七条，第六项修改为：“（六）受送达人所在国的法律允许邮寄送达的，可以邮寄送达，自邮寄之日起满三个月，送达回证没有退回，但根据各种情况足以认定已经送达的，期间届满之日视为送达”。  增加一项，作为第七项：“（七）采用传真、电子邮件等能够确认受送达人收悉的方式送达”。  第七项改为第八项，修改为：“（八）不能用上述方式送达的，公告送达，自公告之日起满三个月，即视为送达。”  六十、删去第二十六章“财产保全”。  民事诉讼法的有关章节序号及条文序号根据本决定作相应调整。  本决定自2013年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